

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 규약

제1조(규약내용)

본 사용규약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한다.

제2조(사유재산화 및 영업허가기준 불포함)

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주차구획을 개인이 사유화하여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 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(사업)의 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다.

제3조(사용시간)

거주자우선주차장주차장은 전일제(24시간), 주간제(09:00~18:00), 야간제(18:00~익일09:00)로 운영한다.

제4조(사용기간)

정기배정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며 수시배정의 경우는 배정일로부터 정기배정의 만료일까지이다.

제5조(사용요금)

구분		전일	주간	야간
노상주차장	거주자	월 40,000원	월 30,000원	월 20,000원
	업무자	월 50,000원	월 35,000원	월 25,000원
노외(공영)주차장	거주자	월 50,000원		

- ※ 주간 배정 구획에 야간 장기 미배정시 업무자에게 배정 가능 / 거주자 야간은 토·일·공휴일 전일 사용
- ※ 할인기준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**등록장애인**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(상이자)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부상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신청 할 경우 80% 할인/ 경형자동차(1,000cc미만) 및 저공해자동차는 50% 할인/ 다동이크ard소지자(중 해당자)는 30% 할인/ 연납자는 5% 할인

제6조(배정기준 및 방법)

- 거주자주차장은 장애정도 ‘심한장애’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. 이후 잔여구획을 배점표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정한 후 남은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한다 단, 지정구획은 이해관계인(거주자,업무자)에게 전일제로 우선 배정한다.
-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거주지(사업장)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, 자동차 배기량, 가산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배정한다.

제7조(사용요금의 납부)

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요금은 분기단위(3개월)로 부과되며, 납부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기한내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해당 주차구획을 제3자에게 배정하여도 어떤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.

제8조(사용 방법)

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 받고 사용 요금을 납부한 후에는 주차권을 교부 받아(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)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9조(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차량파손 등의 책임) -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

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, 손괴,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 사항의 모든 책임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에게 있으며,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, 환경정비 등도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. 또한, 식재·전선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낙하물 및 오염물질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구획의 위치변경은 여분에 구획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.

제10조(거주자우선주차장 삭제에 따른 대책 및 조치)

『도로상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』, 이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소멸되고,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된다.

제11조(사용변경 및 환불 신청)

차량 또는 사용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『거주자우선주차 사용변경신청서』를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,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권이 취소(전출,사용포기,공사 등)되는 경우에는 『거주자우선주차요금 환불신청서』를 작성하여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.

제12조(사용의 직권 취소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제1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시점부터 2년간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배정받은 구획을 타인에게 전매·양도·대여 등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경우
2.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
3.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
4.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및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5.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, 타 차량의 주차·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6.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